

#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|          |             |
|----------|-------------|
| 의안<br>번호 | 관 련<br>1899 |
|----------|-------------|

제안연월일 : 2017년 8월 31일  
제 안 자 : 행정자치위원장

## 1. 수정이유

- 개정안의 취지를 살리면서 상위법령의 규정을 반영하여 일부 내용을 보완하려는 것임.

## 2. 주요내용

-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히 규정함(안 제8조제4항).
-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함(안 부칙).

#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8조제4항 중 “여성의 비율을 40%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.” 를 “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”로 한다.

안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수정안 조문 대비표

| 현 행   | 개 정 안   | 수 정 안   |
|---|---|---|
| 제8조(위원회의 구성)<br>① ~ ③ (생략)<br><신설><br><br>부칙<br>이 조례는 공포한 날<br>부터 시행한다. | 제8조(위원회의 구성) ①<br>~ ③ (현행과 같음)<br>④ 시장 등은 정책결정<br>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<br>을 설치·운영하는 경우<br>에는 위촉직 위원 중 <u>여성</u><br>의 비율을 40% 이상으로<br>하여야 한다.<br><br>부칙<br>이 조례는 <u>공포한 날</u> 부<br>터 시행한다. | 제8조(위원회의 구성) ①<br>~ ③ (현행과 같음)<br>④ 시장 등은 정책결정을<br>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<br>설치·운영하는 경우에는<br>위촉직 위원 중 <u>특정 성별</u><br>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<br>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<br>록 하여야 한다.<br><br>부칙<br>이 조례는 <u>2018년 1월 1</u><br>일부터 시행한다. |

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④ 시장 등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·운영하는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 대비표

| 현 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개 정 안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제8조(위원회의 구성) ① ~ ③ (생략)              | 제8조(위원회의 구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 |
| <p>&lt;신 설&gt;</p> <p>④ ~ ⑥ (생략)</p> | <p>④ 시장 등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·운영하는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</p> <p>⑤ ~ ⑦ (현행 제4항부터 제6항까지와 같음)</p> |